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02-10

2008

# BELGIUM

## 벨기에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02-10

2008

BELGIUM

벨기에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애로사항별 대처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0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국제조세관리관 강 성 태





# 목 차

## I. 일 반 현 황

1. 일 반 사 황	3
2. 경 제 지 표	4
3. 주 요 동 향	5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3

## II. 조 세 제 도



1. 개 요	17
2. 법 인 세	17
3. 소 득 세	30
4. 부 가 가 치 세	37
5. 기 타 세	41

## III. 투 자 여 건

1. 투 자 여 건	45
2. 주요국별 투자진출동향	46
3. 투자유치 전담기관	48
4. 투 자 인 센 티 브	50
5. 투자제한 및 금지	54
6. 기 타 참 고 사 항	55

## IV. 법인설립 및 참고사항



1. 진출형태별 절차 .....	59
2. 공장설립 여건 .....	66
3.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69
4. 노무관리 .....	70

## V. 무역여건

1. 한국과의 교역현황 .....	77
2. 수입규제제도 .....	78
3. 교역관련 규정 .....	79
4. 對韓 수입규제 동향 .....	79
5. 통관 .....	79

VI. 세정관련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83
-------------------------------	----

### 【부록】

1. 벨기에 투자 시 참고할 유관기관
2. 한·벨 조세협약(전문)





# I . 일반현황

1. 일반사항
2. 경제지표 (2007년)
3. 주요동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I. 일반현황

### 1. 일반사항

구분	내용
국명	벨기에(Belgium)
위치	북유럽,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적	30,528 km <sup>2</sup> (유럽의 1/330, 경상남북도 크기)
기후	해양성, 일평균 기온 11.5℃, 최고·최저평균기온 : 15.3℃, 7.8℃
수도	브뤼셀 / BRUXELLES(불어), BRUSSEL(화란어), BRUSSELS(영어)
인구	10.6 백만명
주요도시	브뤼셀(99만명), 안트워프(94만명), 리에주(58만명), 겐트(50만명)
언어	플란더스 지방 :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방 : 불어 브뤼셀 : 불어, 네덜란드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 독일어
종교	로만 카톨릭(75%), 그 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대교
독립일	1830년 7월 21일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 ○ 연방국가 - 연방정부 - 지방정부(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등 3개 지방정부), - 언어공동체(왈로니아 - 브뤼셀의 불어공동체, 화란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성

## 2. 경제지표 (2007년)

<b>국내총생산 (GDP)</b>	3199억 유로(2005년 가격기준) 1인당 GDP : 31,341 유로
<b>주요지표</b>	<p>경제성장률 2.8%      실업률 7.5%      물가상승률 1.8%</p>
<b>화폐단위</b>	EURO 
<b>환율</b>	1 EURO = 1.37미불 (2007년 평균 환율)
<b>외채</b>	1,758억 유로 (공기관 외채)
<b>산업구조</b>	서비스업 (67.4% : 상품서비스 54.1%, 비상품 서비스 13.3%) 제조업 (17.5%, 전기, 가스, 물 제외), 농업 1.2%, 기타 13.9%
<b>교역규모</b>	수출 : 3,143억 유로 수입 : 3,015억 유로
<b>주요교역품</b>	수출 : 화학,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기기, 운송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수입 : 기계, 전기, 전자기기, 화학 및 의약품, 자동차, 철강제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 3. 주요 동향

#### 가. 정치동향

##### □ 최근 정치현안

- 벨기에는 불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방,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 지방 그리고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브뤼셀수도 지방 등 세 지방정부와 두 언어권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 과거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왈로니아 지방은 현대적인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반면에, 플란더스 지방은 자동차 및 IT산업, 물류산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언어권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 2007년 6월 실시한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노동정책에서의 지방정부 권한확대와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연방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2008년 3월 23일에야 연방정부가 출범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두 언어권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벨기에 정부는 명백한 사회, 경제 및 대외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신정부 내각에서 협상 중이나 네덜란드어 정당은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불어 정당은 사회, 경제 및 조세 문제를 지방정부의 권한확대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책 전반에 타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국가제도

### 1) 행정부

연방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 및 3개의 언어별 공동체로 구성되며, 내각책임제 체제이다.

연방정부	중앙정부 · 국가간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
지방정부	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 지역경제, 지역고용 정책, 토지관리, 도로, 항공 등 공공사업
언어공동체	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의 3개 공동체 · 교육, 문화, 복리후생(장애인, 탁아소, 청소년 보호 등)

### 2)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관은 국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형법상 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	브뤼셀에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상급법원	중재재판소(Cour d'Assise), 상고법원(Cour d'Appel)
특별법원	노동법원, 상사 법원, 청소년법원, 전쟁법원, 군법회의
최고행정재판기관	국가 평의회(Conseil d'Etat)

### 3) 의회

벨기에의 연방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은 150명의 직선의원(임기 4년)으로 구성되고 입법권이 있다. 상원은 71명의 의원이 주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 사회보장제도

- 연금제도,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 직업병 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험, 연간 휴가비가 포함되고 그 외 극빈자와 노령자 최저소득 보장, 장애자수당, 양육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일반 급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gross salary) 대비 각기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즉, 봉급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및 실업수당 등 국가 사회보장으로 커버되는 보험을 각기 지불하지 않고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 되어 사회보장 관리기관으로 지불되면 사회보장 관리기관에서 각 해당 기관으로 배분한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5.76%의 할당금과 고용주세 5.67%(연수휴가비 0.04%, 고용인수에 따라 폐업분담세 0.25% 또는 0.29%, 임시실업과 노령실업자 재원 0.10%, 등 포함)를 지불해야 한다.

〈표1-1〉 현행 사회보장 분담 비율 (%)

구 분	근로자 분담율	고용주 분담율	총 비율
1. 의료보험			
- 치료비	3.55	3.80	7.35
- 보상비*	1.15	2.35	3.50
2. 실업수당	0.87	1.46	2.33
3. 연금	7.50	8.86	16.36
4. 가족수당	0.00	7.00	7.00
5. 재해보험**	0.00	0.30	0.30
6. 직업병	0.00	1.00	1.00
<b>총 분담 비율</b>	<b>13.07</b>	<b>24.77</b>	<b>37.84</b>

자료원 : 벨기에 노동부

\* 병가, 휴가 2개월부터 사회보장에서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불함  
(병가, 휴가가 1개월 이내일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

\*\*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의미함

## 나. 경제동향

### □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 연도별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의하면 총 GDP 및 1인당 GDP 등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안정된 추세이나 높은 실업률 및 가파른 수입비중 증가 등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표 1-2〉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DP(10억유로)	288	297	311	320
1인당 GDP(유로)	27,579	28,285	28,584	31,341
실질성장률(%)	2.4	2.0	2.9	2.8
물가상승률(%)	2.1	2.8	1.8	1.8
실업률(%)	8.4	8.4	8.2	7.5
수출(10억유로)	197.0	212.9	292.2	314.3
수입(10억유로)	188.9	212.2	280.3	301.5
외채(10억유로)	129.7	135.4	135.9	175.8
연평균환율(유로/미불)	1.2439	1.2441	1.2556	1.3705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2008.5), KOTRA

### □ 주요 경제정책

#### 1) 경제기조

경제안정과 성장, 과세경감 및 고용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조치를 다소 완화하고 있으며, 2008년 총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84.2%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자국 국민이 해외은행에 저축한 자본을 국내로 송환할 경우 탈세, 위법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벌과금을 완화(추가 이자소득세 6% 적용)하며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부과세율(3%)을 더 감소하는 정책을 수행한 바, 동 조치를 통하여 징수한 세액 중 일부를 향후 국민연금 기금 예비금에 할당하였다.

## 2) 대외경쟁력 정책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인상 억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급여인상은 정책과 별도로 고용시장의 영향을 받고 또한 고용주와 노조, 피고용인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정책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각 지방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방 이익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벨기에 연방정부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해외전시회와 주요 국가에 경제 사절단을 공동 파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3) 새로운 경제정책

2008년 발표된 새로운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1-3〉 2008년 경제개혁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역
예 산 균 형	2010년까지 최소 예산잉여액 0.1% 실현
노동시장활성화	고용률 70% 목표
투 자 장 려	2010년까지 R&D 투자율 3% 목표(GDP 대비)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 회 보 장 강 화	연금과 기타 복지 증가(연간 GDP의 0.057% 할당)

#### □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 경제성장율 : 2008년 1.9% 전망

벨기에 중앙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8년에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과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율이 1.9%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EU집행위는 2008년에 1.7%, 2009년에 1.5%로 벨기에 중앙은행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민간 소비 : 2008년 1.8% 전망

2008년부터 물가상승과 더불어 소비자 구매력의 하락으로 위축되고 있다. 미래 경제성장률에 대한 신뢰감 저조로 금년 민간소비 성장율은 1.8% 선에 머물 것으로 벨기에 중앙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 3) 수출입 (상품 + 서비스)

#### ○ 수출 (2008년 4.3% 전망)

국제시장의 흐름세와 환율이 벨기에 수출을 좌우하고 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유로 환율이 달러에 비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수출의 70% 이상이 유로지역이므로 환율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 ○ 수입 (2008년 4.2% 전망)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활발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에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8년에는 전반적인 경제 둔화로 성장율이 4.2%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 물가 (2008년 2.6% 전망)

벨기에 중앙은행에 의하면 2006년, 2007년에는 주류, 담배, 유류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율은 1.8%였으나 2008년에는 2.6%로 전망되고 있다.

## □ 전체 산업동향

○ GDP대비 벨기에 개별산업의 비중은 공업이 19.6%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전기·가스·상수도업 2.1%와 광업 0.1%를 제외한 순수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 수준이다. 나머지 67.4%는 서비스업이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1.2%에 그치고 있다.

○ 제조업 중에서 건축업(4.4%)을 제외하면 화학(4.2%)과 기계제조(3.6%)가 가장 발달한 산업이고, 그 다음 식품(2.5%), 철·비철금속

산업(2.7%)이며 그 외에 제지·출판산업(1.4%), 비금속(0.9%), 섬유·신발(0.8%)순이며, 섬유와 신발산업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

- 벨기에는 비상품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로서 비상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이며 이는 제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임대와 그 외 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1.1%, 운송 및 통신서비스는 6.6%이다. 의료 및 사회분야의 서비스는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금융서비스 분야는 5.1%로 건축업과 화학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벨기에 기술산업(자동차를 포함한 금속·기계, 정보·통신, 우주·국방산업 등)을 대표하고 있는 벨기에에서 가장 큰 산업협회인 Agoria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벨기에 기술산업 분야가 금년에는 성장을 거의 중단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국제경기의 둔화와 벨기에 자동차 조립산업의 구조재조정, 기술자의 부족과 더불어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들고 있다.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 체결된 협정과 투자 및 교역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표 1-4〉 우리나라와의 관계 요약

구 분	내 용
체 결 협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증면제협정('70), 투자보장협정('74), 항공협정('75)</li> <li>▸ 이종과세방지협정('77), 경제협력협정('78)</li> <li>▸ 문화협정('78), 해운협정('87)</li> <li>▸ 운전면허상호승인교환각서('90)</li> <li>▸ 이종과세 방지협정 보조협약개정 서명('94)</li> <li>▸ 항공협정 개정('95), 사회보장협정서명('05.7),</li> <li>▸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투자보장 협정서명('06.12)</li> <li>▸ 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07.1)</li> </ul>
교역규모	▸ 우리나라의 수출 25.8억불, 수입 11.8억불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승용차, 건설중장비, 기타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아연도강판, 복사기, 봉강, 타이어 등</li> </ul> </li> <li>▸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정밀화학원료, 열연강판, 의약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가축육류, 합성수지, 중후판, 초콜렛과 코코아제품, 사진영화용재료</li> </ul> </li> </ul>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의 대한 투자: 22건, 78,690 천불</li> <li>▸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 2건, 867 천불</li> </ul>
교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450명 (주벨기에한국대사관 겸 EU대표부 집계, 체류자 포함)</li> </ul>

\*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2008년 5월, kotis, INS

## 5.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가. EU의 FTA 추진현황

벨기에는 EU회원국으로서 단독적인 지역무역 협정의 체결 권한이 없다. EU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 제3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EU회원국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적용한다.

#### □ EU의 FTA 정책

- EU의 기본적인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 FTA 추진과 관련 EU는 MERCOSUR, GCC와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AN, Andean 및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EU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표 1-5〉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	검토중
EU, EFTA, 멕시코, 터키, 칠레, 남아공, 유로-지중해 협정	MERCOSUR, GCC,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남미 6국, 안데안 4국



## Ⅱ . 조세제도

1. 개 요
2. 범 인 세
3. 소 득 세
4. 부가가치세
5. 기타세





## II. 조세제도

### 1. 개요

북유럽국가 및 프랑스와 더불어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EU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2007년 벨기에의 총 세율은 덴마크와 스웨덴에 이어 EU 2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조세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직접세의 비율이 높고 간접세의 비율이 낮아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직접세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이고,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간접세로 구성되는데 세입비중은 직접세 55%, 간접세 43% 기타 2%의 비율로 구성된다.

### 2. 법인세

벨기에의 법인세는 벨기에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적용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점을 포함하여 벨기에 거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벨기에 거주기업의 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부과된다.

## 가. 납세의무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 협회 또는 단체 및 기구 등으로 외국법인 벨기에지점은 벨기에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격을 갖출 것
- 벨기내에 주사무소, 고정사업장, 사업의 실질관리장소가 있을 것
- 사업 영위하거나 이익창출 활동을 할 것

## 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유보소득 등에 대한 익금산입 및 배당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회계상 법인의 소득(국내외 모든 수익)

- + 유보소득, 손금불산입 비용,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금
- 이종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있는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
- 기부금, 이월결손금, 배당소득공제, 투자공제
- = 과세표준

## 다. 세율

벨기에 명목 법인세율(nominal ordinary tax rate)은 외국기업과 내국기업 차별없이 33%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현재 경제불황세 3%가 추가되어 33.99%이다. 단, 특정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아래 세율이 적용된다.

〈표 4-1〉 특정 중소기업의 세율

과세대상 순이익(유로)	적용세율	불환세 추가적용세율
0 - 25,000	24.25 %	24.98 %
25,000 - 90,000	31.00 %	31.93 %
90,000 - 322,500	34.50 %	35.54 %
322,500 초과	33.00 %	33.99 %

### 라. 신고 및 납부

- 과세기간 종료일 : 회계연도 종료일
- 신고서 제출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후 6개월 이내
- 납부 : 매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0일에 선납하며 신고서의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확정납부가 이루어진다.

### 마. 각종 공제

#### □ 배당소득 공제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다. 하지만, 그 수령자가 벨기에 기업일 경우 배당소득의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의 95% 상당액을 공제하고 5%가 법인세로 과세된다. 벨기에 배당소득공제에 대한 신청은 배당기업의 최소 의결권 및 과세기준에 간주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한다.

#### ○ 최소지분조건 충족 요건

- 주식의 최소 10% 또는 120만유로 이상 주식 취득
- 취득지분은 소득신고시 금융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최소 1년이상 보유

○ 배당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벨기에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인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업 또는 세율이 벨기에보다 좀 더 우호적인 국가에 설립된 기업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금융 투자 관련 기업
- 외국 소재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으로서 그 회사가 분배하는 소득 자체가 면세대상이 아닌 배당금
- 최소 90%이상 배당공제를 받지 않는 배당금을 다시 배당하는 투자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비용의 공제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연도에 발생되거나 부채 관련한 모든 경비와 요금은 공제 된다. 아래 비용항목은 불공제된다.

- 법인세상당액, 벌과금
- 주식과 관련한 자본손실
- 공제대상이 아닌 연금
- 차(car) 관련 비용, 판매촉진 물품관련 비용등은 일부만 공제

---

**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나 declining depreciation method가 통용된다. Declining depreciation 방법은 연간 감가상각액이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액과 동일하거나 낮을 때까지 사용되고 그 후부터는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부대비용(ancillary costs)은 납세자가 취득년도의 지출로서 소득에서 공제하

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납세자가 임의로 선택가능).

〈표 4-2〉 정액법 상각률(rates)

사무실 건 물	산업용 건 물	기계 및 장치설비	사무가구 및 설비	운반용 기 구	공기구 (small tools)
3%	5%	10~20%	10~15%	20~25%	33~100%

#### 사. 투자에 대한 자본이익/손실

##### □ 실현이익

수입배당금으로 계상된 배당금은 면제되며, 유·무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실현된 자본이익은 대개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처분 이전 5년 이상 사업활동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실현 자본이익은 이연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실현 자본이익은 세무상 상각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여야만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과세이연은 소득실현된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각가능한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미실현이익

미실현 자본이익은 그 이익이 세금면제 유보로 기록되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으로 결정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면제된다.

##### □ 자본손실

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고정자산과 관련된 자본손실은 세금공제 항목이

다. 장부상 평가감된 지분에 대한 미실현자본손실은 공제받지 못한다. 지분에 관한 실현된 자본손실은 이런 지분에 지불된 자본금의 현실적인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산시 자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 아. 이전가격

---

관계기업간 거래와 관련하여 벨기에 과세당국이 이들 거래가 정상가격 (arm's length) 원칙에 따라 거래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세무조사시 기업이익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이전가격 결정 문서(분석보고서 내지 계약서 등) 송장과 함께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벨기에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결정한 이전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기업내부간 이전가격정책을 세우려고 노력한 경우
- 납세자가 필요한 분석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납세자가 적절하고 광범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기초적인 분석 및 결과와 함께 정책을 문서화 하는 경우

---

### 자. 원천징수

---

벨기에 기업이 지급한 배당·이자·사용료 등 소득은 일반적으로 벨기에 국내 원천세율에 따른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인데 경우에 따라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자와 사

용료의 경우 15%이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가 받는 경우라면 이중과세 방지 조항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된다. 소득을 유럽기업에 지불하고 그 관계가 모회사 또는 지배관계인 경우 별도 조항에 의거 면제된다.

□ 모자 지배관계 성립요건

- 벨기에 또는 EU국가 내 설립되어 있을 것
- 최소 15%이상 지분 소유할 것(2007년 기준임. 단계적으로 2009년 까지 최종 10%로 감소할 것임)
- 해당 지분을 최소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보유 또는 위탁할 것
- 양쪽 해당기업이 법적으로 적격할 것

□ 이자와 사용료 지배관계 성립요건

- 어느 한 쪽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최소 25% 소유할 것
- EU국가 내의 거주자인 제3자 기업이 이들 쌍방 기업의 지분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계속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할 것 (만약 12개월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배당받는 경우라면 지급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과세 유지)
- 양쪽 해당기업이 법적하자가 없을 것

○ 벨기에 국내 원천징수 세율(Domestic Rates)

(단위:%)

귀속구분	원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회사(Companies)	<u>10/25</u>	<u>0</u>	<u>0/15</u>	<u>0/15</u>		
개인(Individuals)	<u>25</u>		<u>15</u>	<u>15</u>		

○ 각국과의 조약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Treaty Rates)

(단위:%)

원천천소득 귀속국(Treaty With)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알바니아(Albania)	15	5	5	5
알제리(Algeria)	15	15	15	5/15 3
아르헨티나(Argentina)	15	10	12	3/5/10/15 4
아르메니아(Armenia)	15	5 5	0/10 6	8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15	15	10	10
오스트리아(Austria)	15	15	15	0/10 7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15	5/10 8	10	5/10 9
방글라데시(Bangladesh)	15	15	15	10
벨로루시(Belarus)	15	5	10	5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Bosnia and Herzegovina) 10	15	10	15	10
브라질(Brazil)	15	105	10/156	10/15/20 11
불가리아(Bulgaria)	10	10	0/106 12	5
캐나다(Canada)	15	55	10	0/10 13
중국(China(People's Rep.))	10	10	10	10
크로아티아Croatia	15	55	0/106	0
키프로스(Cyprus)	15	10	0/1012	0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15	5	0/106 12	0/5 14
덴마크(Denmark)	15	0	10	0
에콰도르(Ecuador)	15	15	0/106	10
이집트(Egypt)	20	15	15	15/25 15
에스토니아(Estonia)	15	5	10	5/10 16
핀란드(Finland)	15	5	0/10 17	5
프랑스(France)	15	105	15	0
가봉(Gabon)	15	15	15	10
그루지야(Georgia)	15	5	0/106	5/10 18
독일(Germany)	15	15	0/15 19	0
그리스(Greece)	15	5	5/106	5
홍콩(Hong Kong)	15	0/5 20	0/106 12	5
헝가리(Hungary)	10	10	0/1512 17	0
아이슬란드(Iceland)	15	55	0/106	0
인도(India)	15	15	10/156	10 21
인도네시아(Indonesia)	15	10	10	10
아일랜드(Ireland)	15	15	15	0
이스라엘(Israel)	15	15	15	0/103
이탈리아(Italy)	15	15	15	5
코트디부아르(Ivory Coast)	15	15	16	10
일본(Japan)	15	5	10	10
카자흐스탄(Kazakhstan)	15	55	10	10
대한민국(Korea (Rep.))	15	15	10	10
쿠웨이트(Kuwait)	10	0 22	0	10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23	15	15	15	0
라트비아(Latvia)	15	5	10	5/1016
라투아니아(Lithuania)	15	5	10	5/1016
룩셈부르크(Luxembourg) 24	15	10 25	0/15 19	0
마케도니아(Macedonia)10	15	10	15	10
말레이시아(Malaysia)	15	15	-/10 26	-/10 27



몰타(Malta)	<u>15</u>	<u>15</u>	<u>10</u>	<u>0/109</u>
모리셔스(Mauritius)	<u>10</u>	<u>55</u>	<u>0/106 12</u>	<u>0</u>
멕시코(Mexico)	<u>15</u>	<u>5</u>	<u>10/156</u>	<u>10</u>
몰도바(Moldova) 23	<u>15</u>	<u>15</u>	<u>15</u>	<u>0</u>
몽골(Mongolia)	<u>15</u>	<u>55</u>	<u>0/106 12</u>	<u>5</u>
몬테네그로(Montenegro) 10	<u>15</u>	<u>10</u>	<u>15</u>	<u>10</u>
모로코(Morocco)	<u>15</u>	<u>15</u>	<u>15</u>	<u>5/103</u>
네덜란드(Netherlands)	<u>15</u>	<u>0/5 28</u>	<u>0/10 29</u>	<u>0</u>
뉴질랜드(New Zealand)	<u>15</u>	<u>15</u>	<u>10</u>	<u>10</u>
나이지리아(Nigeria)	<u>15</u>	<u>12.55</u>	<u>12.5</u>	<u>12.5</u>
노르웨이(Norway)	<u>15</u>	<u>5</u>	<u>0/156</u>	<u>0</u>
파키스탄(Pakistan)	<u>15</u>	<u>15</u>	<u>15</u>	<u>0/15/20 30</u>
필리핀(Philippines)	<u>15</u>	<u>105</u>	<u>10</u>	<u>15</u>
폴란드(Poland)	<u>15</u>	<u>5 31</u>	<u>0/56</u>	<u>5</u>
포르투갈(Portugal)	<u>15</u>	<u>15</u>	<u>15</u>	<u>10</u>
루마니아(Romania)	<u>15</u>	<u>5</u>	<u>10</u>	<u>5</u>
러시아(Russia)	<u>10</u>	<u>10</u>	<u>0/106</u>	<u>0</u>
산마리노(San Marino)	<u>15</u>	<u>0/5 32</u>	<u>0/106</u>	<u>5</u>
세네갈(Senegal)	<u>15</u>	<u>15</u>	<u>15</u>	<u>10</u>
세르비아(Serbia) 10	<u>15</u>	<u>10</u>	<u>15</u>	<u>10</u>
싱가포르(Singapore)	<u>15</u>	<u>15</u>	<u>10</u>	<u>5</u>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u>15</u>	<u>5</u>	<u>0/1017</u>	<u>5</u>
슬로베니아(Slovenia)	<u>15</u>	<u>5</u>	<u>10</u>	<u>5</u>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u>15</u>	<u>5</u>	<u>0/106 12</u>	<u>0</u>
스페인(Spain)	<u>15</u>	<u>0</u>	<u>0/1017</u>	<u>5</u>
스리랑카(Sri Lanka)	<u>15</u>	<u>15</u>	<u>10</u>	<u>10</u>
스웨덴(Sweden)	<u>15</u>	<u>5</u>	<u>0/106 12</u>	<u>0</u>
스위스(Switzerland)	<u>15</u>	<u>10</u>	<u>0/106</u>	<u>0</u>
대만(Taiwan)	<u>10</u>	<u>10</u>	<u>10</u>	<u>10</u>
타지키스탄(Tajikistan) 23	<u>15</u>	<u>15</u>	<u>15</u>	<u>0</u>
태국(Thailand)	<u>20</u>	<u>15</u>	<u>10/256</u>	<u>5/153</u>
튀니지(Tunisia)	<u>15</u>	<u>15</u>	<u>15</u>	<u>5/15/20 33</u>
터키(Turkey)	<u>5/20 34</u>	<u>534</u>	<u>15</u>	<u>10</u>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23	<u>15</u>	<u>15</u>	<u>15</u>	<u>0</u>
우크라이나(Ukraine)	<u>15</u>	<u>5 35</u>	<u>2/106</u>	<u>0/10 36</u>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u>5</u>	<u>0/10 37</u>	<u>0/537</u>	<u>0/537</u>
영국(United Kingdom)	<u>10</u>	<u>5</u>	<u>15</u>	<u>0</u>
미국(United States)	<u>15</u>	<u>55</u>	<u>0/15 38</u>	<u>0</u>
미국(신)(United States (New)) 42	<u>15</u>	<u>0/5 39</u>	<u>0</u>	<u>0</u>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u>15</u>	<u>55</u>	<u>10</u>	<u>5</u>
베네수엘라(Venezuela)	<u>15</u>	<u>5</u>	<u>0/106</u>	<u>5</u>
베트남(Vietnam)	<u>15</u>	<u>5/10 40</u>	<u>10</u>	<u>5/10/15 41</u>

---

## 차. 조세인센티브

---

### □ 가상이자 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제도

기업의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지불 금액은 원칙적으로 세제상 비용처리가 되지만 이자를 집루하지 않는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자사에 투자한 자기자본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더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가상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준다.

가상이자공제 제도는 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다국적 기업의 본사 또는 재무본부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법인세율을 기본 33.99%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벨기에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1) 수혜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모든 벨기에 기업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거주자 기업이 벨기에 회사 또는 벨기에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가상이자 공제를 혜택 받으려면 거래관계에 대해 벨기에 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연간 보고를 해야 한다.

#### 2) 적용시기

2007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즉, 역력을 기준으로 2006년 1월1일 이후에 성립된 것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3) 적용률

정확한 지분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의 3.442%(중소기업의 경우 3.942%)를 2007년 부과시점에 공제한다. 2008년 부과시점에의 적용률은 3.781%(중소기업 4.281%)이다.

### 4) 7년간 이월공제

기업과세소득이 부족해서 가상이자 공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그 차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기간의 제한없이 이월이 가능한 일반적인 손실과는 대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가상이자에 대한 공제는 오직 다음 7년간만 이월할 수 있다.

## □ 적정지분 자본금 공제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모든 기업의 법인세는 “adjusted”자본금에 기초하여 총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회사의 지분 자본금

( 공제항목 )

1. 자기주식 또는 금융고정자산의 일부로서 지분과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을 받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상 순가액
2. 외국 고정사업장 또는 외국 부동산의 순자산가액
3. 유형고정자산의 순 장부가액 또는 그 일부가 직업상의 필요를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부분
4. 주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가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
5. 관리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만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의) 권리에 대한 장부가액
6. 재평가익(합병 자본금에 대한 재평가익을 포함) 과 자회사 투자 자본금

## □ 사전조회 문서회답제도(advance tax agreement, advance ruling)

모든 납세자(잠재적 투자자 포함)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특별 상황 또는 개별적 거래에 대하여 세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과세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Federal Public Service Finance부의 Office for Advance Decisions에서 담당하며, 이는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 산정이 용이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1) 신청 절차

사전조회 문서회답제도는 신청자와의 대화를 통한 개방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식적인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몇 가지 의무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출목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필요시 관련된 제3자의 인적사항
- 사업활동 명세서
- 관련 상황의 완벽한 기술
- 판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조항에 대한 참조

요청서는 메일로도 가능하며 네덜란드어나 프랑스어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첨부내용은 영어로도 가능)

### 2) 답변요청

EU 회원국 또는 벨기에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세무당국과의 동일한 상황이나 거래와 관련한 답변요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은(납세자에게 강요함 없

이) 국제거래에 관련된 한 개 이상의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과 양자 혹은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접수증이 신청자에게 배달되어야 하고 신청자는 절차의 진행과정 중에 조력을 받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신청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을 요구할 수 있다.

### 3) 답변시기

답변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납세자와 판정단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판정단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까지 납세자에게 답변시기를 고지한다.

#### □ 손실 이연 제도(Carry-forward of losses):

세무상 손실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될 수 있는데, 이 점은 벨기에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손실이연 제도는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 및 창업 초기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 □ 투자 공제제도

벨기에에서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소득 공제하며,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와 R&D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확대되고 기업이 연구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공제율은 투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3%~21.5%이다.

#### □ 원천세의 면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경우 설립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원천세가 면제된다. 면제율은 최초에는 25%로 고정되거나 점차 증가할 수 있다.

〈표 4-3〉 원천세 면제율

면제율	면제대상 원천소득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고등교육 기관, 박사후 과정 및 보조연구자 등에 대한 NFWO 및 FWOV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li> </ul>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된 과학기관에서 받는 보수</li> <li>▪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연구원이 고등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과학기관을 위해 대학 및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귀속되는 보수</li> <li>▪ 회사의 과학분야 인재(연구자, 연구기출자, 연구개발감독관, 단, 행정관료 및 영리분야는 제외)에 대해서 신생혁신적인 기업에게 귀속되는 보수</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으로 자격이 되는 종업원들을(민간기술자, 의사(수의사), 정밀과학분야 박사) 위하여 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들이 연구개발분야에 종사하는 경우</li> </ul>

### 3. 소득세

부동산소득, 개인자산소득, 직업소득, 기타소득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위의 네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금융소득, 개인연금소득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부부는 별도로 과세되지만 배우자 중 1인의 근로소득이 8,580유로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근로수입금액의 최대 30%를 상대방에게 할당할 수 있다.

개인적 자본수익에 대한 과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저축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은 면세되고, 연금저축은 특별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EU의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마이너스 세율이 적용된다.

---

## 가. 납세의무자

---

### □ 거주자 개인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판정의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소,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 실제적 사실 및 상황을 기초로 하여 평가
- 시민권자로 등록한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반대의 경우 증명 필요)
- 결혼한 사람들의 주소는 가족이 살고 있는 장소로 간주

### □ 비거주자

벨기에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벨기에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 나. 과세대상 소득

---

### □ 부동산소득

벨기에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연간 순 부동산 “장부가액”을 기초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업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금액이 40% 증가한다. 건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의 60%를 부동산소득으로 간주한다. 2006년부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다.

※ 부동산소득 수입금액 = (부동산소득 - 대출이자 등 비용 공제)

### □ 개인자산소득

개인의 자산소득은 개인 소유의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수료 및 배당, 부채나 대부의 이자, 특정 사채, 은행 예금의 이자, 국채 등.

경우에 따라 배당·이자 등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로 종결되기도 하며 이 경우 배당에 대한 세율은 25%(특정한 경우 15%),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이다. 벨기에에서 원천징수세가 공제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은 연간소득세 신고시 포함한다.

### □ 직장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직업소득)

개인소유의 산업·상업·농업기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관련 파트너 및 파트너관계를 통해 발생한 수입, 급여·임금·연금·기타 보수, 개인의 자영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다.

사회보장기여금 상당액과 실제 소요경비(또는 연간 3,200유로 표준공제)는 공제한다. 투자 또는 고용의 촉진을 위한 공제제도도 있다.

### □ 기타소득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동산의 재임대 또는 양도와 일시적인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 등이 있으며, 개인 사유재산의 일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소득은 제외된다.

### □ 총과세소득

다양한 공제(특정 한도까지 용인되는 자선적 기부물건이나 기부금 등)를 적용하여 계산된 상기 네 가지 유형의 소득의 총계는 개인 거주자의 총 과세소득으로 구성된다.



## 다. 개인소득세의 계산

### □ 비용의 공제

납세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며 급여소득자와 전문직업 소득자, 자영업자 등은 실제 경비와 표준공제 중 선택하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적용한다.

표준공제는 3,200유로를 한도로 하여 적용되며, 과세대상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공제 범위액은 아래와 같다.

〈표 4-4〉 표준공제 범위액

과세대상 소득 적용구간	공제율
4,790유로 미만	25%
4,790유로 ~ 9,520유로	10%
9,520유로 ~ 15,850유로	5%
15,850유로 ~ 56,283유로	3%

### □ 세율

개인의 과세소득에 따라 25%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산출된 소득세에 지방세(거주자 9% 이하, 비거주자 6.7%)를 추가부담한다.

〈표 4-5〉 개인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적용구간	세율
7,290유로 미만	25%
7,290유로 ~ 10,380유로	30%
10,380유로 ~ 17,300유로	40%
17,300유로 ~ 31,700유로	45%
31,700유로 이상	50%

## □ 소득세 계산체계

합산소득(부동산+자산+직업+기타) - 각종 공제 × 세율  
= 산출세액

( - )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감면 대상 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퇴직소득 · 초과수당 · 국외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합산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 +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  
= principal

( - ) 원천세, 세액공제, 선납세액 등  
( + ) 선납세액 부족액 또는 무납부분 추가  
( - ) 선납세액 할인  
= 총결정세액

( + ) 지방세 등,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라. 소득세 신고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익년 6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까지 재정경제부로부터 양식을 우편으로 송부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재정경제부에게 신고양식을 요구해야 한다.
- 신고양식을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계결정 된다.

- 과세당국은 관련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의 익년 6월 30일 이전까지 부과세액을 결정한다.
-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과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과세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과세 건을 결정하도록 한다.

#### 마. 비거주자인 납세자

비거주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경우에 한하여, 총 벨기에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이 외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선납세금이 벨기에에서의 유일한 납세의무이다.

#### □ 벨기에 전체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비거주자

벨기에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세 가능한 소득이 2,500유로를 초과하거나, 사업·직업·고용 또는 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벨기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 개인을 소득세의 납세자로 한다. 만약 납세자가 가진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이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며, 이러한 개인에 대해 총 과세소득은 본질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나 지방세는 6%로 고정된다.

#### □ 벨기에에서 발생한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비거주자

임대수입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벨기에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 바. 고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고용주는 고용된 근로자 및 임원(자영업자가 아닌)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이는 세액표에 따라 결정한다.

최종 세액과 원천징수액의 차액은 과세평가서가 발행된 후 두 달 이내에 납부(혹은 환급)한다.

근로자(국적에 상관없음)가 벨기에 내에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경우 벨기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외근무를 위하여 벨기에에서 고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납세의무가 없다.

---

## 사. 자영업자 개인에 대한 특례

---

자영업자 개인(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 직무를 행하는 개인들)은 소득에 대한 예상소득세를 선납한다.

또한, 기업의 임원 중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계약직 임원의 고용형태를 가지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추정소득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선납해야한다. 이는 4, 6, 10, 12월에 각각 4회의 선납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최고 6.75%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예납할 수도 있다.

## 4. 부가가치세

### 가. 납세의무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여기서 경제행위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독립적이기만 하면 그 행위가 주된 것이든 부속된 것이든 모두 과세된다.

### 나. 과세대상

벨기에 세법에서는 다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표 4-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유형	과세대상 거래
상품의 공급	소유자로서의 유형자산의 처분가능한 권리의 양도
서비스의 제공	벨기에 부가가치세법이 의미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모든 거래
상품의 수입	유럽연합 외부에서 벨기에로의 상품의 수입
재화의역내취득	벨기에 내의 공급자 혹은 구매자에 의해 또는 그들의 계정으로부터 회원국에서 또 다른 회원국으로 이송되어진 소유자로서의 이동 가능한 유형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

그러나 등기의무가 있는 부동산의 공급과 면세거래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출거래처럼 공제가 가능한 거래가 있다.

## 다. 과세거래의 장소

벨기에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벨기에 내에서 일어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공급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VAT Code가 사용되는데 이 VAT Code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특정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거래부호는 “TVA”이고, 네덜란드의 거래부호는 “Wetboek BTW”이다.

### □ 재화의 공급 장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수령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장소이다. 만일 재화가 공급자 및 수요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이동되면 공급장소는 그 재화가 수송되는 장소로 간주된다.

### □ 서비스의 공급 장소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장소는 공급자가 그 사업을 설치한 장소 또는 고정된 시설물이며, 이러한 장소나 고정된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고정주소지(본적) 또는 거소지로 간주된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와 EU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거래처를 위하여 수행되거나 공급자와 동일국적이 아닌 EU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수행되는 특별한 서비스(예를 들어 광고)에서 예외가 존재한다.

## 라. 세율 및 신고·납부

### □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을 신고기간(매월, 단 연간 매출액 100만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별신고 가능) 동안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 □ 적용세율

〈표 4-7〉 부가가치세 적용세율

구 분	적용세율	적 용 대 상
영 세 율	0%	담배, 신문, 정기간행물 및 재생가능한 원료
축소세율	6%	주로 생필품으로 여겨지는 제품과 상품,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오래된 건물의 건설공사
중간세율	12%	석탄(코크스), 농업기계와 트랙터의 타이어, 유료TV, 저가임대주택(social housing), 제약업 및 마가린
표준세율	21%	0%, 6%, 1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이와 같이 벨기에의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하여 영세율, 축소세율, 중간세율 및 표준세율 등 네 종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표준세율 21%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벨기에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 VAT 분류방식 신규 도입

특정 조건을 공유하는 납세자 그룹은 2007년 4월 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동일한 납세자로 취급된다. 해당 그룹 구성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가 허용되며, 또한 해당 부가가치세 그룹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신고서만 작성하여야 한다.

### 마. 기타 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세금계산서(송장) 발행, 장부의 비치기장 등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의 개시, 변경 및 폐업시 부가가치세 담당국이나 사업자 담당국에 위탁하여 한 달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
- 재화와 서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송장 발행할 것
- 사적 사용을 위한 개인적 공급 등의 거래를 매일 소득장부에 기재할 것(원칙적으로 송장발행이 요구되지 않음)
- 회사의 종류와 규모의 적합하게 부가가치세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납세자가 비치·기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부는 매입장부 및 매출장부, 송장으로 발행되지 않는 모든 거래가 등록되는 매일 거래장부이다.)
- 매년 1회 1년 동안의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모든 과세대상 거래처의 명부를 작성할 것
- 납세의무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공제 검토를 위한 자산의 부속명세를 작성할 것



## 바.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유럽연합(EU)에 소재하지 아니한 사업체가 벨기에 내에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계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회계대리인은 부가가치세의 기장 및 신고,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등 모든 요구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유럽연합(EU)의 사업체는 벨기에 내에서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회계대리인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5. 기타세

### □ 소비세

미네랄오일, 알코올&주류, 담대 등에는 EU소비세가 부과되며 커피, 비주류음료 등에 대하여 국내 소비세가 부과된다.

### □ 등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예외규정 있음)

-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판매
-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
- 국내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펀드
- 회사에 대한 자산기부

### □ 인지세

은행서류 및 기타 관용서류 발급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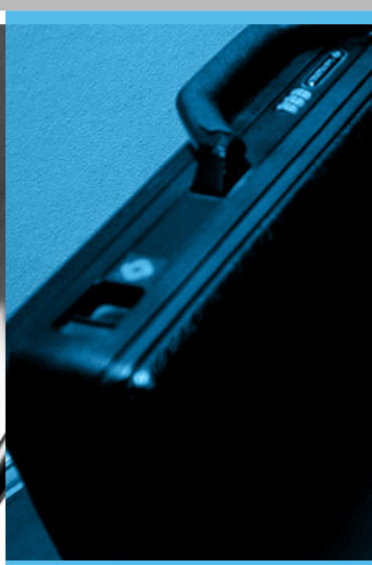
□ 상속·증여세

○ 상속세

- 벨기에거주자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 전세계소득에 대해 상속세 부과
-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 채무에 대한 비용공제 없이 벨기에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증여세

- 부동산 및 사적재산의 증여에 대해 부과하며 세율은 3%~80%에 달함



### Ⅲ. 투자여건

1. 투자 환경
2. 주요국별 투자진출 동향
3. 투자유치 전담기관
4. 투자 인센티브
5. 투자제한 및 금지
6. 기타 참고사항



## Ⅲ. 투자여건

### 1. 투자 환경

#### □ 전략적 위치

- 유럽의 관문 : 안트워프항 물동량 유럽 2위
- EU집행위, EU의회, NATO 본부 등 국제기구 소재
- 차량으로 3시간 이내에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도시 접근 가능

#### □ 우수한 인적자원

-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
  - 불어, 화란어, 독어를 공용어로 지정
- 높은 노동 생산성 : 유럽 3위
- 실무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

#### □ 양호한 비즈니스 기반

- 경쟁력 있는 철도, 공항, 항만 시설
- 통신 민영화로 인한 품질 향상
- 유럽 평균이상의 인터넷 기반
  - 국가경쟁력 25위(2007년 IMD report)

#### □ 개방적이고 외국인 친화적 사회환경

- 도시 경쟁력 14위 기록(2004년 Mercer Human resource)
- EU 통합으로 인한 국가간, 인종간 차별 불식
- 주요 도시별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
  - 학교, 병원, 약국, 행정기관에 외국어 구사인력 다수

## 2. 주요국별 투자진출 동향

-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경제 개방국이며, 수입 및 국제교역의 의존도가 큰 국가이다. 2차대전 이래 외국인 투자가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벨기에 경제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Ernest & Young이 672명의 전 세계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유럽 본사 설립지로 벨기에를 선택한 CEO는 43%였으며, 42%는 물류센터와 행정·회계의 서비스 지사 설립지로 벨기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가별 투자유치 실적

(백만유로)

국 가 명	2005(social capital)	2005(기타)
룩셈부르크	7,289	10,085
미국	3,107	19,367
영국	1,469	32,538
스위스	1,392	6,595
독일	713	23,375
프랑스	-	14,412
브라질	-	-
노르웨이	-	-
외국인 총 투자	31,886	172,345

\*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 가. 우리나라 투자진출 동향

- 지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대 벨기에 누적 투자규모는 신고기준 48건 175백만불이며, 실행된 투자는 46건 135백만불에 지나지 않는

다. 2007년 중 한국의 대 벨기에 투자는 2건으로 실제 투자가 이행된 금액은 867천불이다.

- 대표적 투자기업은 Mons 소재 두산중공업이며 합병 이전 대우중공업이 12.2백만불 ('91년)을 투자하여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여 유럽 전역에 판매 중이다.

〈표 2-2〉 벨기에에 투자한 우리기업

(1,000미불)

현지법인명	투자건수	투자금액
EURO-DAEWOO SA	11	50,921
Hyundai Heavy Industrues Europe N.V	6	27,448
Mobis Pars Europe N.V.	3	24,015
SK Global Belgium	4	20,542
Universal Refining	2	4,217
Antwerp International Terminal	1	1,784
LG Electronics Antwerp Logistics N.V.	2	2,291
Iijin Europe S.A	3	1,000
DAEMO EUROPE N.V	1	414
DKC EUROPE N.V	1	414
CHEMIZEN EUROPE N.V.	3	353
SOCIETE D'INVESTISSEMENT ET PARTICIPATION	4	189
DAEWOO Construction Belgium	0	0
STARFLEX EUROPE S.A	1	145
HANARO EUROPE S.A.	0	0
SPC EUROPE	0	0
SAMMISA CORP. 1 50	1	50
ELNEMO SPRL	1	29
WYSE S.A.	1	21
총계	46	134,744

\* 자료원 : 수출입은행, KOTRA

### 3. 투자유치 전담기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및 사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교육, 환경 및 경제 등 기타의 사항은 지방정부가 관할한다.

#### 가. 연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사항 중 조세분야(세제혜택 등)와 입국(비자, 거주, 노동허가 등 포함) 관련 행정은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표 2-3〉 외국인 투자부와 투자 세제지원부

구 분	외국인 투자부 (Service Investissements Etrangers)	투자 세제지원부 (Cellule de fiscalite des investissements)
소관부처	경제부	재무부
주 소	43, RUE CORNET 1040 BRUXELLES	rue de Louvain 38, 1000 Bruxelles
전 화	32-2-206 58 11	32-2-233 82 64
팩 스	32-2-230 10 35	32-2-233 82 70
소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li> <li>· 회사설립관련 정보, 투자지원제도 등 전반적인 투자정보 제공</li> <li>· 외국인투자 관련 입국수속, 노동허가, 체류 증 관련 행정문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li> <li>· 실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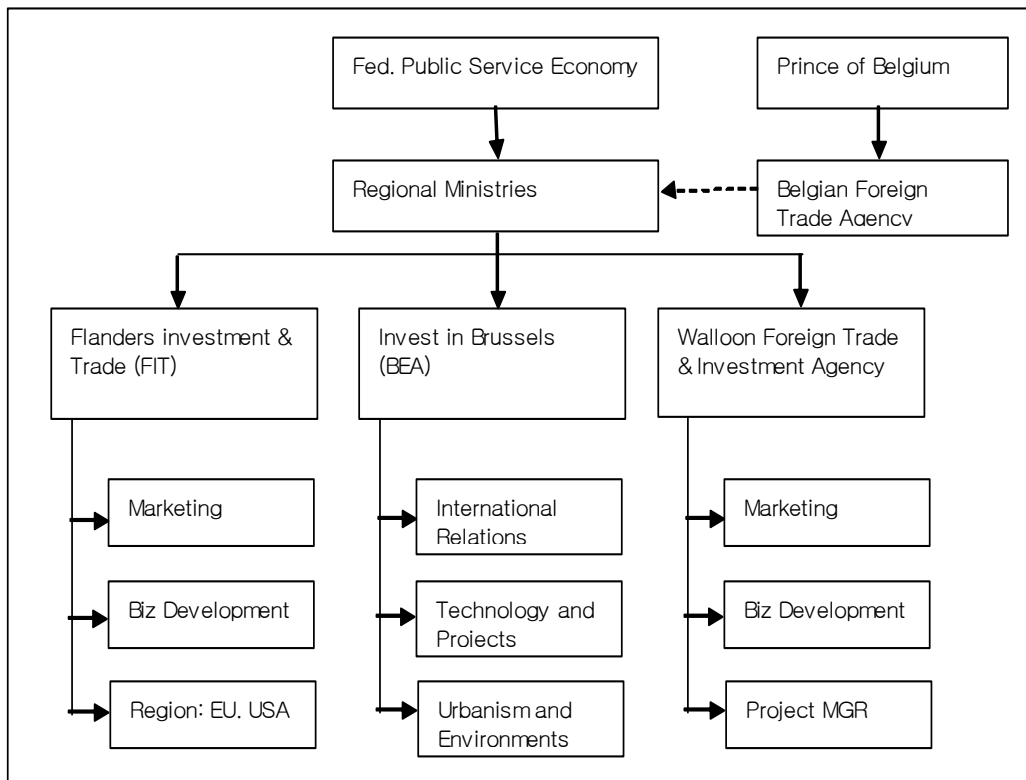


### 가. 지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각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계획, 수행하고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홍보물 발행 및 배포, 투자유치세미나 개최
- 외국인 투자사절단 및 외국인투자자 개별적 지원
- 투자정보 제공, 공업지대·사업파트너 물색, 투자관련 행정절차 지원 등

〈표 2-4〉 투자유치 관련조직



□ 왈로니아지방 정부 (불어계)

- 기관명 :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OFI)

- 주 소 : Place de la Wallonie 1, 5100 NAMUR
- 전 화 : 32-81-33 37 93
- 팩 스 : 32-81-30 64 00
- 인터넷사이트 : [www.awex.be](http://www.awex.be)

□ 플란더스지방정부 (화란어계)

- 기관명 : FLANDERS' FOREIGN INVESTMENT OFFICE (FFIO)
- 주 소 : Gaucheretstraat 90, 1030 BRUSSELS
- 전 화 : 32-2-504 88 71
- 팩 스 : 32-2-504 88 70
- 인터넷사이트 : [www.investinlanders.com](http://www.investinlanders.com)

□ 브뤼셀 지방정부

- 기관명 :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 주 소 : RUE CHAMPS MARS 25, 1050 BRUXELLES
- 전 화 : 32-2-513 97 00
- 팩 스 : 32-2-511 52 55
- 인터넷사이트 : [www.inverstinbrussels.com](http://www.inverstinbrussels.com)

## 4. 투자 인센티브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제도가 전국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특정 개발 지역이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우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벨기에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전반에도 전국에 걸쳐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 가. 보조금

### □ 보조금 지급기준 등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투자지역(낙후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대상은 환경분야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보조 또는 무이자대출로 구분된다.
- 현금보조는 신규 환경규정에의 적응을 위한 기존시설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 지원, 기존의 환경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시에 투자액의 15% 지원, 환경규정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개선 투자시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 □ 무이자 대출

- 무이자 대출시에 직업훈련 프로젝트 비용과 외부 컨설팅 조사의뢰 비용의 50%까지 지원된다. 적용대상은 오염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지역 정화, 환경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대기업지분참여율 25% 이하, 총매출액 최고 20백만유로)의 경우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 무이자 대출 지원규모는 매년 최고 625,000유로에 해당되는 투자계획시 승인 투자액의 50% 무이자 용자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마케팅, 품질검사, 산업구조, 판매화, 환경재선, 기술·경영관리 등의 향상을 위한 외부컨설팅 조사 의뢰, 신기술 적용, 지적소유권보호, 신규희망분야 개발 등을 위한 연수이다. 또한, 환경투자 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12~15%가 지원된다.

## □ 현금 지원

- 현금보조(보조금 부여 후 6개월 이후 최대 3회 분할상환 조건)의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설비채(신규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및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 □ 지방정부의 지원

- 각 지방정부는 관할 지방내의 낙후된 개발지역을 정하고 낙후지역 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

### 나. 유통센터에 대한 특례

---

- 유통센터에 제공하는 특별세제 혜택의 기간은 5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유통센터는 최소 고용인 수나 매출액,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제조건이 없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당국은 세제 혜택 대상 유통활동 리스트를 발표한다.
- 리스트에 없는 활동을 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와 같은 경우 case by csse로 허가 여부를 결정함).

단, 재판매(resale)용으로 구입한 완제품의 제품성격을 향상하거나 변경하는 활동과 순수한 포장활동(완제품 포장이나 벌크로 들여 온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한 재포장)은 유통센터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가상이자 공제(Notional interests)

- 벨기에 정부는 투자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자본을 자사에 투자할 때 가상이자공제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을 도입했다. 이는 자사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가상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상이자를 공제하는 제도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 벨기에 정부는 가상이자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법인세율을 기본 33.99%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라. 고용 인센티브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harges) 부담 경감

- 고용자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400유로의 사회보장세를 기본적으로 경감하고, 고령자나 장기실업자 및 생애 최초 취업자와 비숙련 청년 등 특정그룹을 고용할 경우 분기별로 400~1,000유로를 추가로 경감한다.

##### 고용수당 지급

- 기업이 장기실업자(45세 미만인 경우 실업기간 2년 이상, 45세 이상인 경우 1.6년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00유로를 고용수당으로 지급한다

## 5. 투자제한 및 금지

- 내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 조치는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사회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건설과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기업도 마찬가지다.
-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t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 또한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간 차별대우 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영업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한도액과 투자비용 및 지분소유, 투자분야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항공 및 내수로 운송과 벨기에 내에 등록된 선박 해운은 벨기에 또는 EU 기업의 과반수 지분이 요구되며, 적어도 25%의 비용을 벨기에의 공공당국이 지불하는 공공사업은 벨기에와 EU 기업에 한정된다. 그리고 철도와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는 아직까지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공공분야로 민간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 벨기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조건, 노동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 6. 기타 참고사항

- 벨기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부서가 있으나 동 부서는 벨기에 전체의 투자정보 제공 및 각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와 연결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보조금 및 각종 혜택의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다.
- 외국인은 정부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즉, 투자 희망자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투자보조금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V. 법인설립 및 참고사항

1. 진출형태별 절차
2. 공장설립 여건
3.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 노 무 관 리



## IV. 법인설립 및 참고사항

### 1. 진출형태별 절차

은행, 운송, 보험, 식품제조 및 판매, 유통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없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없이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히 정해진 회사설립 신청서와 정관서는 없다. 외국 법인은 현지 진출 목적에 따라 연락사무소나 지점, 현지법인 등 회사 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

현지에서 직접 제조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업체는 대부분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다.

#### 가.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non-commercial branch를 의미하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벨기에 경제부내 공증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형태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 구비서류

- 본사정관(주한 벨기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함)
- 현지사무소 결정 이사회 회의기록 발취문
- 현지 법정 대리 책임자 임명장, 본사 최근 연차회계보고서 사본

##### ■ 비용 : 1건당 10유로

##### ■ 소요기간 : 1~2일

##### ■ 신청 및 발급처

- 기관명 : SERVICE DE LEGALISATION
- 전 화 : 32-(0)2 501 89 00
- 팩 스 : 32-(0)2 501 37 90
- 이메일 : legalisation.ae@diplobel.fed.be

## 나. 법인설립

- 벨기에의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Company Limited by share (S.A/N.V),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S.P.R.L. /B.V.B.A.). Co-operative company,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등이다.
- 벨기에에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기업은 벨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 자회사(a 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 또는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지점(a 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ry)을 선택할 수 있다.

〈표 3-1〉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점

구 분	자회사(subsidiary)	지점(branch)
경 영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필요 ☞ 국적 거주요건 없음	현지지점을 운영할 법적 대표인 임명 ☞ 국적 거주요건 없음
회계보고서	벨기에 법에 의거 회계사무 집행 및 연차회계 보고서 발표	외국 모회사의 연차회계보고서 발표
세 제	출자액의 0.5% 등록세로 지불	등록세 지불의무가 없음 ☞ 모사가 일정금액 자금 조달

### □ 현지법인 자회사(subsidiary) 설립

- 벨기에 법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는 벨기에 법인으로 모회사와 법적으로 다른 조직이다. 이와 같은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책임한계는 자회사 고유자산 범위 내이며, 따라서 주주의 개인적 책임도 자회사 자본에 불입된 금액의 한도에 그친다.

- 사업자등록은 경제부소속 Cellule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 에서 하며 동 기관에서 일단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등록을 따로 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무국에 등록된다.

〈표 3-2〉 법인 설립절차 요약

구 분	설립절차	소요시간	비용
1단계	▶ 구좌 개설, 회사창설 자본금 예탁	1일	없음
2단계	▶ 공증서류제출(공증인이 사업계획서, 회사정관 등 창설기업서류를 공증하고 상법재판소에 등록함, 공증인이 대행) ▶ 정관은 불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적어도 2년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1일	상법재판소 서류 등록비용 25€ + 관보발표비용 209.81€ + 공증인비용 898€ + 각종서류 공증비용 = 약 1,500 €
3단계	▶ 회사설립지역에 소재한 기업창구 (guichet d'entreprise)를 방문하여 법인등록, 가가치세, 사회보장기관에 등록, 기업번호를 받음 (기업창구가 각 해당기관에 대한 서류절차를 대행) * 경제부는 공인기업창구 리스트를 발표함	2일 (법인등록 1일,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관 등록 1~2일)	법인등록비 71€ + 부가가치세등록비 60.5€

□ 설립자본(Share capital) 및 주주 요건

-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주식자본금은 62,000유로이며 주식 자본금은 완전 불입되고 완전 지급되어야 한다.

주식자본은 물품으로 불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가치 평가보고서가 동반 되어야 한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주주는 2인(개인 또는 법인주자, 주주의 국적은 불문함)이며, 주식회사 설립에는 약 3주가 소요된다.

-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1명 또는 수명으로 구성된 회사로 각자 출자액에 한해서 책임이 있고, 일정 조건 하에서만 소유주를 이전할 수 있다.

최소 설립 자본금은 18,600유로이며 완전 불입되고 최소한 6,200유로(1/3)가 지불되어야 한다.

#### □ 회사설립 신청 및 서류 제출

- 벨기에 정부는 최근 회사설립과 사후 행정을 간료화하기 위해 기업 창구(Business one stop shops)를 신설했다. 동 창구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리스트는 경제부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 다. 투자방식

---

- 투자 방식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합자, 인수 및 합병 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다수는 단독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벨기에 현지 파트너 선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현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독자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작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 특히,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현지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파트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기업을 투자 파트너

로 선택하는가 문제다. 현지 시장을 잘 알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 □ 합작투자 계약 방식

- 합작투자자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서는 없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하여 작성된다.

#### 【기재 항목 예시】

1. 정의	11. 회계 및 회계감사	21. 계약양도
2. 목적	12. 기술라이선스 및 상표사용승인	22. 비용부담
3. 합작투자회사설립	13. 계약기간	23. 합작투자회사의 계약
4. 자본금출자	14. 계약의 종료	24. 계약의 이행
5. 발기인	15. 계약종료의 효과	25. 이행강제 비용
6. 주식의 양도	16. 권리의 불 포기	26. 준거 언어
7. 신주 인수권	17. 독립성	27. 계약발효일자
8. 주주총회	18. 불가항력	28. 완전계약조항
9. 이사회	19. 상호대리의 배제	
10. 회사의 기본 경영전략	20. 중재	

### □ 구비 서류

- 기업 정보 (업체 명, 설립 년도,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등)
- 기업 현황 및 기술 보유 상황
- 투자 성격 및 목적
- 투자 규모 (예상 투자액, 고용 인원 수 등)
- 현지 투자 기업 형태 (현지법인, 또는 외국인 법인 등)
- 자원 조달 계획서(FINANCIAL PLAN)등

## 라. 기타 참고사항

### □ 지사개설 가이드

- 벨기에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책임자가 될 사람을 파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서류들이다. 그러나 벨기에 국적의 현지 거주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 VISA 및 체류허가, 근로허가를 발급을 필요가 없다.
- 한국 국적 소유자를 벨기어로 파견하여 지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람은 벨기에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 체류허가, 노동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와 외국인 카드 (노동허가)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획득해야 한다.

### □ 사전준비단계

-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임시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지명한 의사에 의해 신청자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와 신원증명서(최근 5년간 위법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 직업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직업 신청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 직업카드 신청서에는 한국 본사의 회사명, 법인형태, 주종 활동분야 등 법인에 관한 정보와 신청자의 직위, 지사의 법인형태 및 활동분야, 생산 또는 판매 제품 등 설치할 지사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사의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번호, 회계(대조대차표), 부가가치세 번호, 회사와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물, 운영현황 등 견실한 회사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벨기에 지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요건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 □ 사전 조사해 두면 좋은 것

- 외국인 근로카드 담당부서는 외국인 사무국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와의 면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는 면담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도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 동 부서는 신청자에게 면담 일, 시간,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외국인 직업카드 발급 소요기간은 3-5개월 정도인데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신속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체류증 취득

- 벨기에 입국 후 일주일 내에 임시체류 허가증과 직업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구청에 거주등록을 하면 체류증이 발급된다. 체류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무실 확보

- 지점설립 작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무실 확보 작업이다. 직업카드 신청서에 벨기에 사무실 주소 기재란(사무실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예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이 있다.
-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임시 체류 허가신청시 정해진 주소가 있으면 절차가 빠를 뿐 아니라 사무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은행구좌 개설 및 직원 채용을 비롯하여 지점개설행정에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 거주지 확보

- 현지 사무실 설치에 서둘러야 할 작업 중 하나가 생활거주지 확보이다. 현지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체류증을 교부 받으려면 현지에서 거주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삿짐도 빨리 인수받을 수 있고, 전화 및 은행구좌개설, 자녀의 학교등록 등 정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 2. 공장설립 여건

### 가. 공장설립 가이드

- 벨기에는 전국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육성하기 위하여 250개의 산업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산학공단은 15개이며, 나머지는 일반 산업 공단이다.

지방별로는 왈로니아(Wallonia) 지방에 122개, 플란더스(Flanders) 지방에 111개, 브뤼셀(Brussels) 수도권에 17개가 분포되어 있다. 벨기에의 산업 및 산학공단은 지방정부 및 지방 자치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 입주를 환영하고 외국기업에 한해 입주를 받는 외국인 기업 전용 공단은 없다.

- 투자와 관련,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조세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신규 고정자산(연구개발, 에너지 절약투자 및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만 대상)에 투자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 벨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각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산업활동에 따라 적절한 산업단지를 권유하고 있다.
- 외국인 기업이 벨기에에 생산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립하는 방법은 대개 신규 건축이나 기존 건물의 개축인데 설립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각 지방 정부나 구청 당국에서 해당 구역의 도시 계획, 산업활동 허가 지역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심층 검토하여 설립 후에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브뤼셀 수도의 경우 각 구청에서 해당 구역의 도시계획 및 산업활동 허가지역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 □ 관련 행정부

플란더스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stuur Ruimetelijk Ordening</li> <li>• Kruidtunin, 20 1000 Brussel</li> <li>• Tel : 02/204 21 11</li> </ul>
왈로니아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ministr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li> <li>• Rue des Brigades d'Irlande 1</li> <li>• 5100 Namur/Jambes</li> <li>• Tel : 081/33 21 11</li> </ul>
브뤼셀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istere de la Region de Bruxelles-Capitale</li> <li>• Administr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du Logement</li> <li>• Centre des Communications du Nord</li> <li>• 80 Rue du Progres, 1030 Bruxelles</li> <li>• Tel : 02/204 21 11</li> </ul>

---

## 나. 공장부지 확보

---

- 공장부지 구입 전에 설립할 지역의 토지관리 행정부서를 접촉하여 공장부지가 남아있는지의 여부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구청 구역 내에서도 공업 또는 상업활동이 허용된 지역과 완전 금지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벨기에에는 공업용수, 배수시설 및 전력공급과 통신시설 등 제반 시설을 갖춘 산업공단이 약 230개나 있는데 대부분 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입주를 환영하며 공단부지의 구매와 임대가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 취득시 특별한 규제는 없고, 다만 공증인(Notary)의 공증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공증 비용은 2.5%, 부동산 세율은 12.5%이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 또는 도 지방정부의 소유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불하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불하받을 때 공증비용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 다. 건축허가

---

-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지 관할구청(Commune)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주민의 의견조사나 환경영향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신청 후 1개월 내에 허가서가 발급 된다.

## 라. 영업허가

- 관할 구청당국에 건축허가와 더불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영업활동 성격에 따라(위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 2가지로 구분)주민의 의견조사와 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거나, 임시허가(최고 2년) 또는 장기허가(최고 30년)가 발급된다.
-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1차로 구청의 College d'urbanisme에,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허가가 발급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나 영업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방정부마다 각기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 지방정부에서 환경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방정부당국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지방정부에서 거부된 경우 물론 영업 소재지를 바꾸어 다른 지방정부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 3.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 외환관리

- 벨기에에서는 외환관리정책의 하나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다. 또한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발생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 외환사무국(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 MBLC)이 최고 외환관리 기관으로서 외환지급 및 이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외환지급 및 이전 업무기능은 일반 은행에 위임되고 있다.

#### □ 자금조달

-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은행 융자다. 기업은 벨기에은행 외에도 증권시장(EURONEXT BRUSSELS)에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 □ 은행

- 현재 총 104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벨기에법인 은행이 54개, 외국법인 은행이 50개이다. 한편 EU 서비스 활동 자유규정 하에 통보된 은행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의 수는 495개이다.
- 벨기에는 국토 크기에 비해 은행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로 은행 간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 4. 노 무 관 리

### 가. 고 용

- 벨기에에서는 특별한 법적 고용절차는 없고 광고 또는 정부구직기관이나 민간구직업체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단, 근로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무기한 고용계약이 일반적이다. 단, 특정 업무일 경우 한정된 고용기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기한이 한정된 고용계약을 2년간 4회 이상을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에는 ‘trial period’를 명시할 수 있고, 동기간은 노동직의 경우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최소 1달 최대 6 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인 력

- 총 인구는 천만명이 조금 넘는데 활동인구(16~65세)는 7백만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66%이나 실질 고용인구는 4.9백만명이다. 고용인구 중 약 17.9%는 상업(도·매) 및 통신, 약 11.9%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는 약 11.8%, 공무원과 국방, 병원 등 비상품 서비스는 약 27.3%이다.
- 실업률은 7.5%를 상회하며, 실업자의 대부분은 학력이 낮고 전문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젊은 층과 50세 이상의 노년층이므로 실제 고학력 소유자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 노동력은 풍부하지 못하다.
- 특히 공업이 발달한 플란더스 지방당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최근 외국(기존 이민자) 근로자의 유치를 위해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벨기에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고 실업수당도 높아 실업수당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제안할 경우 일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현지 투자는 적당하지 않다.
- 벨기에는 공식 언어인 불어와 네덜란드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보통 3, 4개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이나 기관들은 브뤼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유로 바로 이 점을 꼽고 있다.

## 다. 임금

- 임금 수준은 EU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4위로 높은 수준이다. 벨기에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계되어 있다.
- 고용주는 종업원 급여(gross) 이외에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 비는 훨씬 높아진다.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률은 해마다 다소 변화되며 현재 사무직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율은 사무직 급여(gross)의 32.34%다.
- 일반적으로 평일의 초과 근무수당은 임금의 5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은 100%이나 이 경우에도 협약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 대해 월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연말에(13개월분 급여) 지급한다.
- 최대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5일, 37.5시간이다. 초과근무는 법규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허용된다. 근무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융통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최대 7시간 36분 또는 주간 37.5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가능하다.

## 라. 외국인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취업 허용을 뜻하는 이민 문제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나 집행 간부급 인력이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는 정상적인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는 당국의 이민허가를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 마.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 □ 현지인 사회보장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보장범위는 직업인에 대한 의료·실업·노후(연금)·산재 및 직업병이며 가족수당과 의료 보험 등으로 직업인의 가족까지 확대된다. 실업 및 의료 보장기금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기 할당된 몫을 지불한다.

사회보장기금 지불은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기금 분담액은 총 급여(gross salary)의 13.07%이며, 고용주의 분담액은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8.44%, 사무직 근로자는 32.34%이다. 고용인의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 □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EU 지역외 국적의 비 거주인(non-EU-residents)이 벨기에에서 근무할 경우 그 해당인 국가와 벨기에와의 협정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인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적용되어 벨기에 사회 보장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법인의 현지 지사 책임자로 파견 근무할 경우)

한국 국적인의 경우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미 체결로(현재 협상중)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상사의 임시 파견직원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벨기에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단, 주재 상사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 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 V. 무역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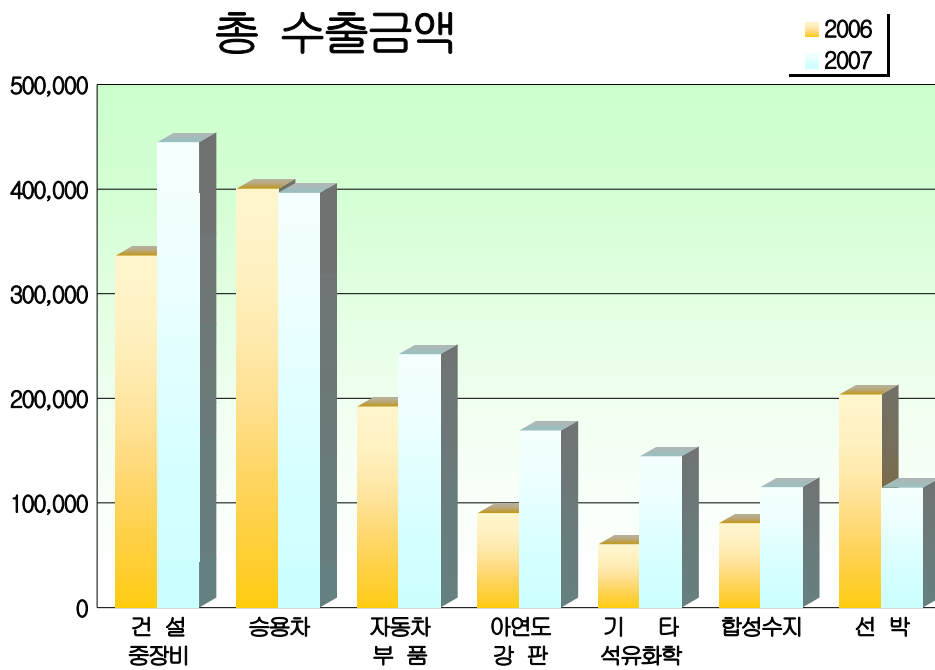
1. 한국과의 교역동향
2. 수입규제제도
3. 교역관련 규정
4. 對韓 수입규제 동향
5.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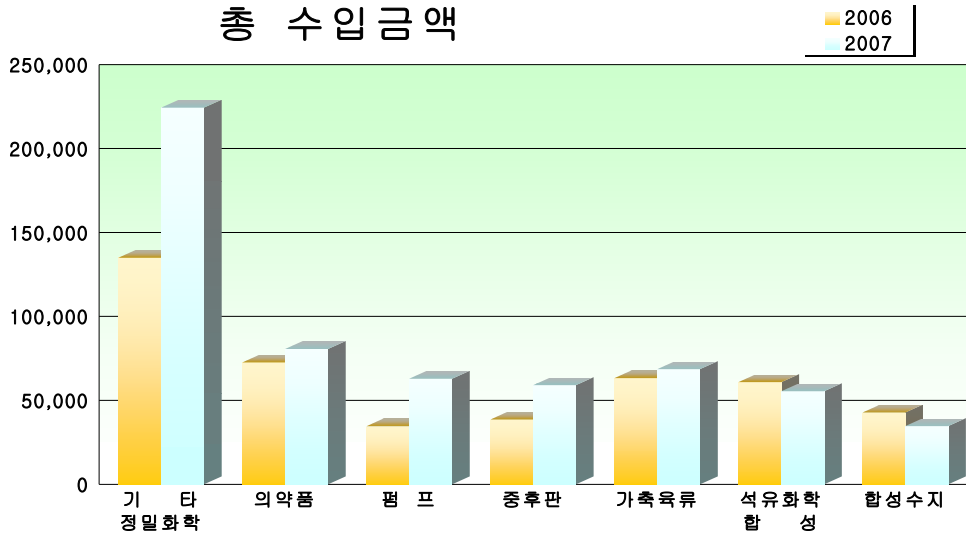
## V. 무역여건

### 1. 한국과의 교역동향

〈표 5-1〉 대 벨기에 수출 동향



〈표 5-2〉 대 벨기에 수입 동향



## 2. 수입규제제도

### 가. 개요

EU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차원에서 결정되며 EU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 □ 주요 수입규제제도

- 반덤핑
- 반보조금(Anti-subsidy)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3. 교역관련 규정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 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 4. 對韓 수입규제 동향

〈표 5-3〉 반덤핑 규제 현황

구 분	조치유형	적 용 대 상
규제종	반덤핑관세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PET 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덤핑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조사종	반덤핑관세	스텐레스스틸 냉연강판(신규조사), 철강제관연결구류(만기재심), 폴리에스테르단섬유(중간재심)

### 5. 통관

#### 가.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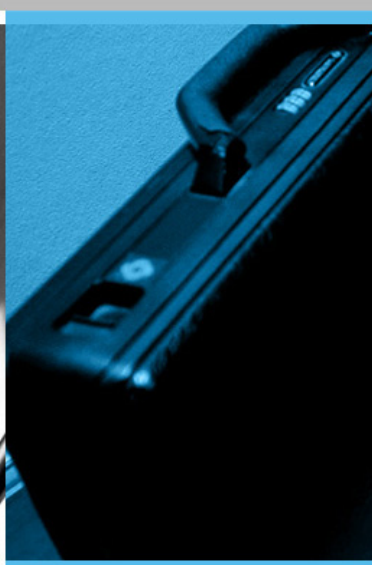
벨기에 수입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물품(EU역외 물품을 의미)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

동 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벨기에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통관절차 흐름도

출항 ➡ 입항 ➡ 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 신고 관  
리 ➡ 관세 등 제세납부





## VI. 세정관련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1. 애로사항
2. 해결방안



## VI. 세정관련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1. 애로사항

#### 가. 진출준비시 애로사항

- 벨기에 조세제도 안내 책자 부재로 관련 법을 찾기가 힘들

#### 나. 진출 후 애로사항

- 해외현지 세무대리인에 지나치게 의존
- 소득세 계산구조의 복잡함

### 2. 해결방안

- EU지역 세무협력관 파견을 통한 세정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한·EU FTA 협상개시로 투자확대 기대에 따라
- 세정안내 책자 발간을 통한 지원
  - 다양한 언어의 세무용어집 필요
  - 벨기에 조세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진출 전·후 우리기업이 각종 조세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부 록

1. 벨기에 투자시 참고할 유관기관
2.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Belgium



## 부 록

## 1. 벨기에 투자시 참고할 유관기관

〈표〉 우리나라 참고기관

기 관 명	웹사이트 주소
주한벨기에대사관	<a href="http://www.belgium.or.kr">www.belgium.or.k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한국무역협회	<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
글로벌윈도우 - 무역투자정보포털사이트	<a href="http://www.globalwindow.org">www.globalwindow.org</a>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 해외투자유관기관의 ONE-STOP 해외진출통합정보	<a href="http://www.ois.go.kr">www.ois.go.kr</a>

〈표〉 벨기에 참고기관

Federal	Service For Foreign Investments	<a href="http://www.investinbelgium.fgov.be">www.investinbelgium.fgov.be</a>
	Federal Department For Foreign Investment	<a href="http://www.fiscus.fgov.be">www.fiscus.fgov.be</a>
	Federal Public Service Foreign Affairs	<a href="http://www.diplomatie.fgov.be">www.diplomatie.fgov.be</a>
State	Flanders Investment & Trade	<a href="http://www.fitagency.be">www.fitagency.be</a>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in Wallonia	<a href="http://www.ofisa.be">www.ofisa.be</a>
	Brussels Enterprise Agency	<a href="http://www.bea.irisnet.be">www.bea.irisnet.be</a>

## 2.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Belgium

1994년 4월 20일 서울에서 서명

1996년 12월 31일 (조약 1360호)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6.12.28]

### 제1조 【인적범위】 [1996.12.28]

이 협약은 일방 또는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대상조세】 [1996.12.28]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계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1996. 12. 31 개정)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재산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1996. 12. 31 개정)
3. 특히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1996. 12. 31 개정)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벨기에에 있어서는,
    - (1) 개인소득세
    - (2) 법인소득세
    - (3) 비영리단체세
    - (4) 비거주자소득세
    - (5) 개인소득세에 부가하는 특별부과금



상기 제세 이외에 원천세, 상기 제세와 원천세에 대한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보완세를 포함한다. (이하 "벨기에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 중요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1996. 12. 31 개정)

### 제3조 【용어의 정의】 [1996.12.28]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a) "벨지움"이라 함은 벨지움 왕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륙붕에 관한 벨지움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해상,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관한 벨지움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벨지움 주권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 (b)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 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 (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 (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그 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의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 (f)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 (g)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i)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ii)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 (h)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
- (i)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i) 벨지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 (ii)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996.12.28]**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a)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996.12.28]**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장이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관리장소
  - (b) 지점
  - (c) 사무소
  - (d) 공장
  - (e) 작업장
  - (f)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 (g)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 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c)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 (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나 동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은 상기 4항에서 언급한 대리인 또는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

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제6조 【부동산 소득】 [1996.12.28]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계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7조 【사업소득】 [1996.12.28]

1. 일방계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계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계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타방계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계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계약국내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계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때문에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조항의 규정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96.12.28]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 또는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있어 타방체약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1996. 12. 31 개정)

#### 제9조 【특수관계기업】 [1996.12.28]

-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 제10조 【배당】 [1996.12.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비록 이자형태로 지급될지라도 벨지움 거주자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구성원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되는 소득도 의미한다.

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어떤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996.12.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3. 본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 3항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동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제12조 【사용료】 [1996.12.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및 텔레비존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982. 5. 21 개정)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 사용료가 발생하는 계약국에서 그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소득】 [1996.12.28]**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타방계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계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인적용역】 [1996.12.28]**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계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 그 일방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계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계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계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계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



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제15조 【임원의 보수】 [1996.12.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인이 경영 또는 기술적 성질의 상근업무 수행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동업자로서의 개인적 활동에 따라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인 또는 거주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 **제16조 【연예인 및 운동가】 [1996.12.28]**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및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에서 보조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에 의해 조직된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이 만약 어떤 단체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격하다고 확인된다면, 동 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이용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 **제17조 【연금】 [1996.12.28]**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

적 연금 및 유사지급금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법의 혜택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제도에 의한 연금 및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996. 12. 31 개정)

#### 제18조 【정부용역】 [1996.12.28]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i)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ii)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a)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b) 그러나 연금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연금이 벨기에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벨기에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996. 12. 31 개정)

#### 제19조 【교직자】 [1996.12.28]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

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996.12.28]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b)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180,000 벨기에 프랑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1996. 12. 31 개정)

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양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b)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c)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된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225,000 벨기에 프랑 또는 이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1996. 12. 31 개정)

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전문적 수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 (b)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동 타방채약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300,000 벨기에 프랑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1996. 12. 31 개정)

### 제21조 【기타소득】 [1996.12.28]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앞의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항목은, 만약 그러한 소득이 타방채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제22조 【이중과세 방지】 [1996.12.28]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1996. 12. 31 개정)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벨기에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 벨기에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벨기에내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벨기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1996. 12. 31 개정)
  - 가. 벨기에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하기 "나"호 및 "다"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벨기에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로부터 면제하나, 동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소득이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더라면 적용할 수 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벨기에 국내세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벨기에의 거주자가 제10조 제2항에서 취급된 배당으로 하기 "다"호에 의해서 벨기에 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배당, 제11조 제2항 또는 제7항에서 취급된 이자, 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에서 취급된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부과된 한국조세는 벨기에의 관련 조세에서 공제한다. (1996. 12. 31 개정)
  - 다. 벨기에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국의 법인에 의하여 벨기에의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벨기에 법에 의한 한도와 조건에 따라 벨기에의 법인소득세로부터 면제한다. (1996. 12. 31 개정)
  - 라. 한국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의 손실이 벨기에 법에 의하여 벨기에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제

되었을 경우, 다른 과세 기간의 한국소재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으로부터 전년도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한, 동 이윤에 대해서는 상기 "가"호에서 규정한 소득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 제23조 【무차별】 [1996.12.28]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세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9조, 제11조7항 또는 제12조 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동 기업의 과세소득의 결정상 공제된다.
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벨기에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벨기에 법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가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동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벨기에 거주자인 법인의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1996. 12. 31 개정)
6.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 제24조 【상호합의절차】 [1996.12.28]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3조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또는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25조 【정보교환】 [1996.12.28]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과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각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기소에 관련된 자 이외의 인, 당국 또는 법원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 (b)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 (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제26조 【조세 징수 협조】 [1996.12.28]

1. 양 체약국은 부가세, 가산금, 이자, 비용 및 비형벌적 벌금뿐만이 아니라 제2조에서

말하는 조세를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조한다.

2.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타방체약국의 상기 조세의 고지 및 징수에 적용될 법규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해야 할 상기 1항에서 말한 조세채권의 고지 및 징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채권은 요청받은 체약국에서 우선적인 채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고 동 체약국은 요청한 체약국의 법규에 의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강제집행의 수단도 적용할 의무가 없다.
3. 상기 2항에서 말한 요청은 요청한 체약국에서 그 집행을 허가하는 문서의 공식 사본과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적인 행정 또는 사법상의 결정의 공식사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4.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조세채권에 대해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동 타방국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상기 1항 내지 3항을 준용한다.
5. 제25조의 1항의 두번째 귀절은 이 조에 의하여 요청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제공될 어떠한 정보에도 적용된다.

####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1996.12.28]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28조 【발효】 [1996.12.28]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서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 (a)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또는 원천 징수된) 조세
  - (b)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직후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 제29조 【종료】 [1996.12.28]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일방체약국은 비준서의 교환연도 이후 5년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또는 원천징수된) 조세

(b)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양 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

##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지움왕국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제2조(b)항에서의 "한국의 조세"라 함은 한국의 방위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2조의2항의 (a) 세항에서 의미하는 사용료는 산업목적상의 특허권, 의장, 신안, 도면, 산업상의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을 양해한다.
3. 벨지움 거주자인 법인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은 동 법인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 또는 동 법인의 자산을 분배할 경우에 있어서 벨지움법에 따라 행하는 과세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양 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 [1996.12.28]



---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벨기에로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벨기에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2008.1.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벨기에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1424  
팩스번호 : (02)723-9976

---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행정사무관	이 선 주
	세무조사관	김 현 국

중부청 수원세무서 세무조사관 조 수 진(031-250-9042)

인쇄처 : (주)아트팰리스 T.(02)2277-1088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